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예 술 인 복 지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한 규정 삭제(제2조·별표1)

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삭제(제2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 부 기준) 「예술인 복지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 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u>	(삭 제)
<u>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u> <u>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 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u>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 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 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 사가 위촉한다.</u> <u>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 된다.</u>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u>	(삭 제)

<u>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 <u>⑤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u> <u>⑥ 재단의 상임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u> <u>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u>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u>	
---	--

<u>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않은 경우</u> <u>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u>	
--	--

[별표 1] (삭제)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가. 일반기준~~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1) 문학	가)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 제2호가목·다목 및 제3호가목에서 같다) 동안 시(동시를 포함한다), 시조 또는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총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소설(동화 및 청소년소설을 포함한다) 또는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단편 소설의 경우는 총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총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문학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 다), 사진, 건축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전시회에 전시한 실적을 합하여 총 5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작품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총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음악, 국악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총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반을 1장 이상 낸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서 총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총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아)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무용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 공연에서 안무를 1회 이상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총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연극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공연의 연출을 1회 이상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공연을 통하여 희곡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희곡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총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6) 영화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상영영화(「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말한다. 이하 이 호·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상영영화의 연출을 1회 이상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상영영화를 통하여 시나리오를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총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영화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7) 연예(演藝)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 등에 총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을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패션쇼에 총 3회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대본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관련 잡지 등에 대중문화 비평을 총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아)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대중문화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만화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작품을 총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총 5회 이상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비평을 총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비교: 위 표 중 둘 이상의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실적 하한을 1점으로 하여 각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시: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5편 이상의 작품 발표가 기준인 경우 해

~~당 기간 동안 1편을 발표했다면 0.2점으로 환산)하여 더한 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이면 세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최초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가목의 일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1) 문학	가)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호나목에서 같다) 동안 시(동시를 포함한다), 시조 또는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단편소설(동화 및 청소년소설을 포함한다)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작품을 전시회에 1편 이상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음악, 국악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자취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무용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연극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6) 영화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상영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7) 연예(演藝)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패션쇼에 1회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만화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1회 이상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비평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나.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3.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가. 일반기준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1)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 미술, 사진, 건축)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총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로 참가한 경우는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음악, 국악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무용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연극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영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2편 이상의 상영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6) 연예(演藝)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7) 만화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으로 총 2년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총 3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비교: 위 표 중 둘 이상의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실적 하한을 1점으로 하여 각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시: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참여가 기준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편에 참여했다면 3분의 1점으로 환산)하여 더한 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이면 세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최초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가목의 일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1)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 타), 사진, 건축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음악, 국악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무용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연극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영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상영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6) 연예(演藝)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7) 만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사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1화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영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의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